

의안번호	제 327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345 회)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1월 15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27
----------	-----

제출연월일 : 2016년 1월 1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의식제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활동 지원을 통한 원활한 국·도정 업무 추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
- 정의(안 제2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 발전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의 범위(안 제3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도민 등에게 확산시킬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활성화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보조사업을 수행한 활성화단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주민센터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준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부칙 제5조(기부·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2. 비용 발생 요인

-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 지원

3. 관련조문

- 사업의 범위(안 제3조 2항 및 3항)
 -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신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나. 추계 결과 : 역량강화 사업 50,000천원, 사기진작 사업 65,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세 출	57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역량강화 사업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사기진작 사업	32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정 성 업